

변경 대비표

에셋플러스자산운용(주)

1. 대상 투자신탁: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1 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(효력발생일): 2026.08.28.

3. 변경사유: 환매대금 지급 주기 단축

4. 변경내용

<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>

항 목	현 행	변 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요약정보>	- 환매방법 1) 17 시 이전: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, 제 9 영업일 지급 2) 17 시 이후: 제 5 영업일 기준가 적용, 제 10 영업일 지급	- 환매방법: <업데이트> 1) 17 시 이전: 제 4 영업일 기준가 적용, 제 6 영업일 지급 2) 17 시 이후: 제 5 영업일 기준가 적용, 제 7 영업일 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 에 관하 사항	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.매입,환매,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 1)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(D+8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(D+9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<table><tr><th>D 일</th><th>D+3 일</th><th>D+4 일</th><th>D+8 일</th><th>D+9 일</th></tr><tr><td>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</td><td>기준가 적용 일</td><td></td><td>환매대금 지급 일</td><td></td></tr><tr><td>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</td><td></td><td>기준가 적용 일</td><td></td><td>환매대금 지급 일</td></tr></table>	D 일	D+3 일	D+4 일	D+8 일	D+9 일	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	기준가 적용 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		기준가 적용 일		환매대금 지급 일	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:<업데이트> 11.매입,환매,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 1)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6 영업일(D+5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7 영업일(D+6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<table><tr><th></th><th>D+3 일</th><th>D+4 일</th><th>D+5 일</th><th>D+6 일</th></tr><tr><td>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</td><td>기준가 적용일</td><td></td><td>환매대금 지급 일</td><td></td></tr><tr><td>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</td><td></td><td>기준가 적용일</td><td></td><td>환매대금 지급 일</td></tr></table>		D+3 일	D+4 일	D+5 일	D+6 일	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	기준가 적용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		기준가 적용일		환매대금 지급 일
D 일	D+3 일	D+4 일	D+8 일	D+9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	기준가 적용 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		기준가 적용 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+3 일	D+4 일	D+5 일	D+6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매청구일(17 시 이전)	기준가 적용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매청구일(17 시 경과 후)		기준가 적용일		환매대금 지급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8 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5 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--	---	--